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요 약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의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중국 진출 기업의 환경규제 체감실태

구분	강화 전(前)	강화 후(後)	비 고
규제집행 강도	낮음	매우 높음	정기, 불시검사 빈도 ↑, 자동·과학화 장비 활용
공무원 기강	낮음	매우 높음	원칙적, 보수적, 관시를 통해 해결 어려움
자의적 판단	높음	높음	수치는 명확, 규제문구·처벌수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 여전
인허가 취득	양호	매우 어려움	장기간 소요, 인허가 불허 업종 확대
주민관심도	낮음	매우 높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져 빈번한 민원제기
환경설비 비용	낮음	매우 높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설비 비용 상승
지역별 규제	정부규제 준용	정부규제 이상	해당 지역의 환경이슈에 따라 정부규제 기준 이상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 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¹⁾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 중국은 급속한 산업 및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전체 강과 하천의 7%, 토양의 16.1%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있고, 대기오염도 심각하여

500개 도시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1% 미만

* 초미세먼지(지름 2.5um이하 먼지: PM2.5) 농도 ($\mu\text{g}/\text{m}^3$): 란저우(150), 시닝(141), 우루무치(140), 지난(123), 베이징(121), 시안(113), 청두(111), 허베이(111), WHO 권고 기준(25)

* (수질) 음용수 총량의 94% 기준 미달, (대기) 48%의 도시에서 산성비 발생

□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외국인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음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기준 강화로 기 진출기업이나 신규 진출 예정기업의 환경관련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음

□ 중국은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아직 많은 기업이 신규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기업 퇴출 사례에서 보듯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유발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진출전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됨

*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1994년 중국 난징시에 진출했으나, 2011년 난징시로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퇴출명령을 받음(파이낸셜뉴스 2011.07.05.)

* 네덜란드 석유화학회사인 DSM사 역시 오염유발 사유로 2011년 난징시에서 퇴출(아주경제 2011.07.05.)

□ 따라서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기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II.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처로 내수시장을 겨냥한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13)

○ 대 중국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은 각각 전체

1) 관시(关系) :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즉 연줄(대인관계)을 뜻하는 비속어, 중국과의 사업에서 흔히 사용

해외투자 중 29.1%(817개사)와 17.2%(약51억 달러)로 1위와 2위를 기록, 주요 투자처인 미국에 비해 법인수는 1.7배 많았으나 금액은 약 6억달러 적음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형태는 현지 내수

시장 판매(42.69%), 제3국 수출(30.68%), 한국으로의 역수출(23.9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급 품목은 중간재(52.18%)가 최종소비재(47.82%)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조사

표 2.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사업형태 및 취급품목

사업형태	평균 비중	취급품목	평균 비중
중국 내수시장 판매	42.69%	중간재 (투자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	52.18%
제3국으로의 수출	30.68%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바로 소비자들이 활용)	47.82%
한국으로의 역수출	23.98%		
기타	2.65%	합계	100.00%
합계	100.00%		

주: 중국 현지 소재 對中 투자 진출 업체 180개사 대상 설문결과임(조사기간: 2014년 9월 22일~10월 31일)
 자료: 명진호 외, 한국무역협회(2014)

□ (연도별) 2007년 이후 대 중국 신규법인, 해외투자 신고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투자금액은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대 중국 신규법인, 해외투자 신고건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10년 경기회복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 중국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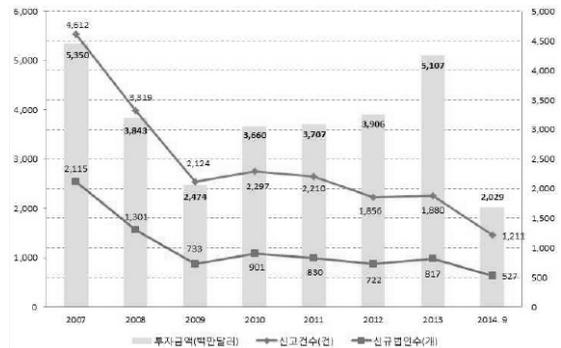


표 3. 우리나라의 국가별 직접투자금액 현황

단위: 개사, 백만달러

구분	2007	2009	2011	2012	2013	
중국	신규법인	2,115	733	830	722	817
	투자금액	5,350	2,474	3,707	3,906	5,107
미국	신규법인	1,258	506	444	458	478
	투자금액	3,608	3,582	7,158	5,553	5,657
호주	신규법인	53	33	31	24	23
	투자금액	143	266	1,382	2,234	2,656
네덜란드	신규법인	13	14	9	12	6
	투자금액	661	1,057	761	1,242	1,5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재편가공

○ 투자금액은 2009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4년 다소 하락 - 2014년 9월 기준 신규법인(527개사), 해외투자 신고건수(1,211건), 금액(20억달러)은 전년 동월대비 각 55.5%, 12.7%, 42.8% 감소

*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중국 정부 외국기업 투자 유치전략의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중국투자 기피와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업종별) 대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금액은 점차 증가하나, 신규법인수는 감소하는 추세

○ 제조업은 투자금액은 약 45억달러(전체업종의 88.3%, '1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신규법인수는 390개사(전체업종의 47.7%)로 다소 감소추세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기업이 대거 철수*하여 제조업체 비중이 62%(07)에서 44.6%(14.9)까지 하락

* ('07)1,312개사 → ('08)679개사 → ('09)377개사

그림 2. 주요 업종의 연도별 투자금액 비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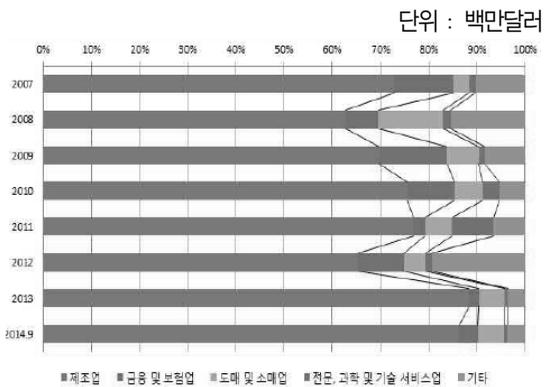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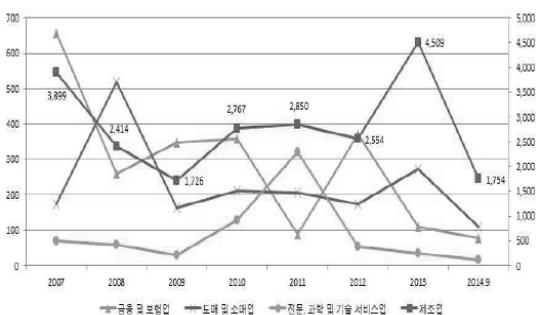


그림 3. 주요 업종의 연도별 투자금액 동향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재편가공

□ (규모별) 중소기업(2)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대중국 전체 투자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2007년(전체기업의 94.8%) 이후 2010년 89.8%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90%이상 유지

그림 4. 투자자 규모별 연도별 신규법인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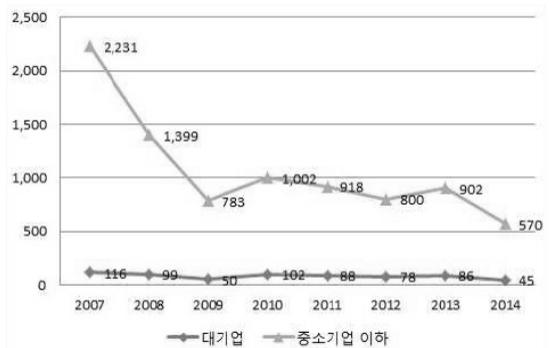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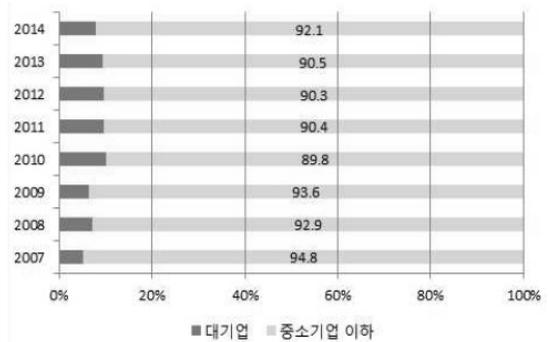


그림 5. 투자자 규모별 연도별 신규법인수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재편가공

2)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 개인, 기타(비영리단체 등) 포함

Ⅲ. 중국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1. 중국 환경규제 강화기조와 전망

□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

○ 공업정보화부는 2014년도 제1기 공업업종의 낙후 및 과잉생산기업 퇴출리스트를 공개하며, 생산라인(설비)의 가동중지와 함께 금년 말까지 전기업 퇴출 및 다른 지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을 금지³⁾

- 리스트에는 시멘트, 제지, 염색 등 15개 공업업종의 1,181개 기업들이 포함

* 시멘트 381개, 제지 221개, 합금주철 164개, 염색 107개, 코크스 44개, 제철 44개, 동 제련 43

개, 카바이드 40개, 납축전지 39개, 제강 30개, 피혁 27개, 평판유리 18개, 납 제련 12개, 전해 알루미늄이 7개, 화학섬유 4개

□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

○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만 총 11,11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벌금부과액은 총 483.45백만 위안(약 78.9백만 달러)에 달함

- 절강성의 경우 3개월(7,8,9월)동안 2,197건의 행정처분에 의거, 약 1억 3백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고, 사법처리건도 173건에 달해 관리감독 수위를 짐작케 함

표 4. 환경보호 12.5 계획의 도시 규모별 환경목표

지역	오염수처리율		오염침적물 무해화처리율		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	
	2015년 목표	2010년 평균	2015년 목표	2010년 평균	2015년 목표	2010년 평균
직할시, 성소재지, 중점도시	90%	77.5%	70%	《25%》	100%	77.9%
일반도시	85%		60%		100%	63.5%
현급도시	75%	50%	-		-	
현	70%	60.1%	50%		-	-
마을	30%	《20%》	50%	-	-	

자료 : 중국 환경보호부,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2014)

표 5. 2014년 3분기 지역별 행정단속 적발 건수, 벌금액과 사법처리 건수

구분	행정단속 건수	벌금액(백만위안)	사법처리 건수
북경	648	3398	0
톈진	50	197	0
허베이	902	2,553.57	0
산시	409	2,251	44
네이멍구	88	366	2
랴오닝	111	271	8
길림	8	16	0
흑룡강	28	118	0
상해	570	3,228	5

3) 중국환경보호부(14.8월),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구 분	행정단속 건수	벌금액(백만원)	사법처리 건수
장쑤	2,021	10,284.04	18
저장	2,197	10,312	173
안후이	28	46.9	2
복건	269	449	56
장시	6	30	0
산둥	271	2178	14
허난	396	2,034.64	3
후베이	72	420	4
후난	119	370	12
광둥	1,550	4,726	22
광시	127	159	0
하이난	58	124	2
충칭	352	1,621	0
쓰촨	174	540	1
구이저우	157	595	1
운난	104	569	0
서장	2	15	0
산시	199	726	3
간쑤	83	163	1
칭하이	17	26.4	0
닝샤	6	4	0
신장	92	554.08	0
병단	0	0	0
합계	11,114	48,345.63	371

자료 : 중국 환경보호부

- 각 지방정부의 업무평가에 '환경목표' 달성 여부가 중시되면서, 지역별 이행 정책도 점차 강화

표 6. 중국 동부 6개 지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목표(2014년)

지역	환경보호 목표
중국 전체	- 오염방지 강화: 스모그 빈번한 특대도시와 지역 중심으로 PM2.5 및 PM10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심화, 낙후 오염처리시설 폐기 및 개보수 - 에너지절약: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9% 이상 감축, 이산화황 및 COD 배출량 모두 2% 감축 등
장쑤	-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산둥	- 중앙정부 제시 목표 달성
베이징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 감축 - 수자원 소비 4% 절약 -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이상 감축 - 대기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5% 감축
랴오닝	- 목표 미제시
텐진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5% 감축 -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약·오염배출 감축목표 달성
상하이	- 환경보호 관련 투자 비중이 GDP의 3% 유지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감축 - 오염물질 배출 축소에 대한 중앙정부 목표 달성

자료 : 중국 중앙 및 6개 성시자치구의 2014년 정부업무보고, KIEP(2014) 참고하여 재구성

표 7. 동부 6개 지역 주요 환경규제

지역	환경규제
장쑤	- 장강(长江)유역 및 태호(太湖)유역으로의 오염수 배출 전면 금지 - 공업폐기물 발생 기업은 관련자료를 환경보호부서에 신고 및 등록
산둥	- 오염수 배출 관련 종합자료를 관할 환경부서에 신청 및 등록 - 블랙리스트 기업은 수질오염 배출 자동 검측설비와 CCTV설비 네트워크 추가 설치
베이징	-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60여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신공정 프로젝트 건설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 석탄화력 사용시설 친환경에너지 사용 설비 개조 의무화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랴오닝	- 요하(辽河)유역의 모든 하류에 오염수 배출 금지 - 요하유역에 제지, 화공, 날염, 가죽, 도금, 주조, 시멘트, 유리, 강철기업 설립 불가 - 시멘트 산업 등 32개 기업 퇴출 - 환경법규 위반 기업에 대해 '프로젝트 허가 제한제(区域环保限批)' 시행 - 1만 4,000여 개의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감찰 시행 및 벌금 부과
톈진	- 무석탄구역'을 지정, 해당지역 내 석탄사용 전면 금지 - 시멘트업체 탈질개조, 화력업체 집진개조, 석유정제업체 탈황개조 필수 - 외환도로 인근 위험화학물 업체 타지역 이전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상하이	- 장강(长江)하구 자연보호구역과 식수 발원지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금지 - 오염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외고교 보세구역(外高桥保税区)'내 설립이 금지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 경제성장 목표와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저감 목표 달성여부가 자치구 평가에서 중요 항목으로 작용

□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

○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03~'13) 506만 개의 기업과 자영업자로부터 약 1,700억 위안(약 30조 4,000억원)에 달하는 오염배출 비용을 징수

- 중국 지도부는 각 지역의 환경보호부서가 오염배출비용 징수를 통한 환경경제정책 조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기업의 환경의식 업그레이드와 오염정화시설 보원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촉진했다고 자체 긍정적인 평가

*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는 중국의 환경관리사업

중 가장 먼저 보급된 기본제도 중 하나임

○ 한국무역협회의 중국진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14. 10, 180개 업체)에 따르면, 19.4%의 업체가 중국 사업의 최대 애로요인 중 하나로 환경규제를 꼽음⁴⁾

○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환경규제는 국민들의 환경의식 고조 및 국제적인 환경보호 움직임과 맞추어 강화기조가 지속될 전망

○ 2011년 12.5 발전계획 발표에 이어 올 2015년 1월, 25년 만에 첫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본격 시행

- 개정 법률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벌금액의 상한제를 없애는 등 감독권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 12.5계획에 이은 2016~2021년 기간의 중국

4) 관련하여 자세한 설문결과는 명진호 외, 한국무역협회(2014)를 참조

정책방향을 이끌 13.5계획의 논의과정에서도 환경 보호는 여전히 주요 부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현재 7개성에서 시범 중인 배출권거래제도를 13.5계획 아래 중국 전역에서 시행할 계획

-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

2. 진출 기업의 환경규제 체감 실태

□ (규제집행 강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도 법률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었으나 최근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처벌 등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짐

- 첨단 장비를 활용, 대기과 수질 오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 및 불시검사 빈도를 점점 높이고 있음

- 오·폐수 방류구에 염측정장치를 설치,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하거나 첨단 장비를 활용,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점검반이 올 경우 지방정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사례] 기존에는 정기 점검이 연 1회 정도였으며 불시 점검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나, 규제집행이 강화되면서 정기점검은 연 2~3회, 불시 점검은 월 1~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음. 점검형태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샘플링까지 실시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최근 규제강화로 벌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고, 위반 기업에게는 관련자 구속 및 공장가동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2013년 처벌된 기업(장쑤성)만 45개에 이르며 주로 화공, 제지, 염색 관련 업체

[사례] 올해 8월 장쑤성내 자동차 도금회사에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진폭발 사고 이후, 장쑤성내 환경규제가 급격히 강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안전기준을 맞출때까지 완전가동중지 명령 처분을 받고, 중국 전 지역의 금속 광택과 관련된 생산공장에 대해 임시 폐쇄조치를 단행. 관련 공무원, 전문가, 설계업자 등 역시 구속 및 벌금 처분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공무원 기강 강화) 사람관계 및 연출 즉 관시(关系)는 여전히 존재하나 최근 공무원들은 보다 원칙을 지키고 보수적으로 행동

-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관시문화는 계속되고 있으나 시설증축, 환경규제 관련 태만사항 또는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관시로도 해결하기 어려움

[사례]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원칙적인 대답과 함께 인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받았음. 장쑤성 분진폭발 사고의 전례를 염두하여 중국 공무원들이 보다 원칙적으로 행동하고, 시설 증축시 간섭 빈도도 높아지고, 인허가 역시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어 환경 관련 부문에 있어서는 관시 역시 별 소용이 없음을 토로함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여전)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 역시 보다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불확실성 증대

- 규제위반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벌금액 및 처벌수위가 조정되고, 환경규제 관련 수치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문구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많아 불확실성 산재

□ (지방정부 환경규제 강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환경안전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춘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앙정보보다 지방정부의 규제가 더 심한 경우 발생

[사례] 방류수 중 총 질소배출기준이 중앙정부는 20ppm인데 반해 장쑤성의 경우 15ppm에 달해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사례] 장쑤성 내 호수의 녹조사건 이후 질소(N)와 인(P)의 배출기준을 0으로 변경, 실질적으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현재 질소와 인을 배출하는 기업을 퇴출 시키고 있음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빈번한 민원제기)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 다수

○ 상해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거주민이 많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경영활동에 애로발생

[사례] 공장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생산설비를 공장안쪽으로 이전하였으나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장주변에 방음막을 설치하였음

[사례] 공장설립을 위해 2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공장 준공단계 이전에 건립반대 민원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보상비도 못 받은 채 사업을 포기

[사례] 빵굽는 냄새 등의 민원으로 주택가 요식점포 허가가 어려우며, 점포 운영 중에도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도로주변에 점포 설치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추가 환경 설비투자 필요)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투자, 친환경연료 사용, 의무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 현행 환경안전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설비투자를 증대,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연료로 전환, 환경오염 책임보험을 국가지정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 등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대응 필요

[사례] 신규공장 설립시 수질오염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 오염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5000ppm)보다 훨씬 높은 기준(50ppm)을 설정, 고가의 장비 및 설비를 갖추

[사례] 보일러 연료 역시 경유와 철광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있음. 중국의 친환경연료 사용으로 호주의 광산산업이 타격받을 정도로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

[사례] 위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지정 업체만을 이용해야 하나, 장쑤 성 무석에는 1개 업체만 있어 처리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점을 감안, 자체 적으로 폐기물 보관창고를 증설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인·허가 취득 애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업들은 신규·추가 투자 관련 인허가 획득이 어려워졌으며, 인허가 기간도 장시간 소요되어 경영상 애로 발생

○ 최근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업 대상 신규 공장 설립, 증축 및 대지인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전면 불허

* 플라스틱, 도금, 염색을 주로 하는 업종의 기업에게는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음

[사례] 방류수 배출 등 환경 관련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

[사례] 점포 개설시 환경관련 점검요소와 허가 사항이 많아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있어 점포 오픈 속도에 악영향

자료: 중국 현지 진출업체 자체 인터뷰

□ (정보제공 미흡) 중국 정부에서 환경규제기준 정보를 관련 기업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지 않아 기준 자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모호한 기준 역시 다수

○ 일반적으로 규제가 변경된 후에 공문을 보내거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경규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야함

3.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1) 진출완료 기업

□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선택사항에서 대응전략 마련

- 매년 발표되는 지역별 양회 내용을 파악, 자치구 환경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방향 모니터링
 - 규제 점검 및 오염배출비용징수 담당 공무원과의 기민한 관계 유지를 통해 관시를 활용한 제도 이행 용이성 확보
 - 강화된 규제 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청산보다 클 경우를 대비해 3가지 선택사항(중국에 잔류, U턴, 타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동시에 진행
 - 규제강화로 인한 투자비용 상승부담과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비교
 - 일부 지방성은 중국에서 사업한지 10년 이내에

법을 청산하면 감면받은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양도에 따른 이익금도 환수해 가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고려한 전반적인 분석 이행

- 한편, 강화되는 중국의 환경제도에 친환경기술 적용, 친환경제품 생산 등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

(2) 진출준비 기업

□ 중국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 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이 필수적임

- 자치구별 환경특성(대기질, 수량, 폐기물양 등) 및 오염도, 지역 주민 인식 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분야별 업종, 위반사례, 신규 시장 확대 정도가 상이
 - 또한 자치구별 환경관련규제 강도와 검측 방법, 때때로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도 검사 절차 등이 갑자기 변경되기도 하는 등 리스크 상존
 - 환경규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거나 강한 지역, 강과 호수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을 보유한 지역, 민원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이 많은 지역은 투자 지양

□ 최근 업종별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동종 산업단지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문건이나 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는 동종업계 담당자나 관련 기관을 통한 확인 및 점검 필수
 - 투자초기 규정, 유예기간, 투자확약 등을 반드시 문서로 기록·보존하여 증거를 남기고, 공장 건립 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의 중간 점검 및 확인 필수
 - 처음부터 투자규모를 모두 공개하지 말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최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추가투자 의사 표명 필요
 - 정부 영향력이 지대한 시장이 중국이므로, 우

리 정부와 기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진출과정에서의 용이성 확보 가능

- 경기도청은 2013년 환경협력 양해각서 및 프로젝트 합작협의를 체결한 라오닝성을 포함, 장쑤성, 산둥성, 허베이성, 지린성, 산시성, 광둥성 등 7개 중국 지방 **省政府**와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중소 환경기업 중국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환경규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지인 채용이 필수

- 진출 지역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각종 제도 및 행정법규 이행방안 모색
- * 화북지방(허베이성, 산시성)은 청화대학 출신들이, 화동지방(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푸젠성, 산둥성)은 동제대학 출신들이 공직을 포함하여 환경분야에 주도권을 갖고 있음(경기개발연구원, 2008)

(3) 공통사항

□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전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초 인식이 필수

○ 환경규제의 준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자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았으며, 위반시에는

기업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는 점 등을 반드시 인식

- 과거에는 관련규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발생시 관사로 해결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즉각적 대응하고 준수할 필요

IV.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자국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관련 법률, 기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환경 법령의 기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 검사 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철저하고 엄정한 시행을 촉구

○ 중국 환경당국의 단속 강화는 위반사례로 이어져, 올해 3분기에만 총 11,11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벌금부과액은 총 483.45백만 위안(약 78.9백만 달러)에 달함

□ 또한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각종 사법절차가 인맥 등의 비공식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중국 현지 사정이 경영상 큰 애로로 작용

○ 중국 화남미국상회(5)가 425개의 중국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2월에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겪는 최대의 애로사항은 ‘중국 정부와의 법률 관련 마찰’인 것으로 조사됨

표 8. 중국 진출 기업의 환경규제 체감실태

구분	강화 전(前)	강화 후(後)	비 고
규제집행 강도	낮음	매우 높음	정기, 불시검사 빈도↑, 자동·과학화 장비 활용
공무원 기강	낮음	매우 높음	원칙적, 보수적, 관시를 통해 해결 어려움
자의적 판단	높음	높음	수치는 명확, 규제문구·처벌수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 여전
인허가 취득	양호	매우 어려움	장기간 소요, 인허가 불허 업종 확대
주민관심도	낮음	매우 높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져 빈번한 민원제기
환경설비 비용	낮음	매우 높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설비 비용 상승
지역별 규제	정부규제 준용	정부규제 이상	해당 지역의 환경이슈에 따라 정부규제 기준 이상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5)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구로, 1995년 설립된 이래 현재 약 2,00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는 법적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현지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외진출에 큰 장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인 영세성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성공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

□ 따라서 중국진출에 있어서 사전 점검 항목에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항목을 포함하고,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용 증가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해야 함

○ 인건비 절감, 중국 내수시장 확보,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의 잇점을 얻고자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江苏省大气颗粒物污染防治管理办法
 江苏省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条例
 江苏省长江水污染防治条例 (2012年修改)
 江苏省太湖水污染防治条例 (2012年修改)
 江苏省太湖流域主要水污染物排放指标有偿使用收费管理办法
 山东省环境保护条例
 山东省水污染防治条例
 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
 北京市实施《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办法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조례

랴오닝성 요하(辽河)유역 수질오염예방조례
 랴오닝성 환경보호조례
 天津市大气污染防治条例
 天津市环境保护条例
 上海外高桥保税区条例
 上海市长江口中华鲟自然保护区管理办法
 上海市环境保护条例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정보지 GHG World” (2014 여름호)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008)
 KOTRA, 2014 중국지역진출전략 보고서, (20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 2013 12.5계획 환경시장 전망” (2012)
 명진호 외,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한국무역협회(2014)
 KIEP,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2014)
 중국저탄소망 (14.6.20) 환경경영정보포털
http://www.excite.co.jp/News/world_g/20140322/Postseven_246382.html
<http://www.epochtimes.co.kr/>
www.lnepb.gov.cn (랴오닝성 환경보호국)
www.bjepb.gov.cn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www.sdcin.gov.cn (산둥성 환경보호청)
www.jshb.gov.cn,(장쑤성 환경보호청)
<http://www.sepb.gov.cn/fa/cms/shhj/index.htm>
 (상하이시 환경보호국)